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39
----------	------------

제안연월일 : 2025년 6월 2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기본원칙은 목적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문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의2를 제1조의2로 하고,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기본이념”으로 함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를 제1조의2로 하고, 조 제목 “(기본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안
<u>< 신 설 ></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u>< 신 설 ></u>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 제1조의2로 이동 ></u>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②·③ (생 략)	제1조의2(기본이념)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u>시장</u>----- ----- -----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u>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